

e편한세상 센텀 하이베뉴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51-782-5777

주택 유형	규제지역 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민영	비규제지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 상한제
없음	최초 당첨자발표일(2026.02.20.)로부터 6개월	없음	미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01.30.(금)	2026.03.11.(수)	2026.03.16.(월)	2026.03.19.(목)	2026.03.20.(금)	2026.03.21.(토)

I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 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 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APT잔여세대 (무순위 / 임의공급 / 불법행위재공급)	○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3.11.(수)**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059** 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1.30.(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002**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금회 공급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6.03.16.(월)	2026.03.19.(목)	2026.03.20.(금)	2026.03.21.(토)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e편한세상 센텀 하이베뉴 주택전시관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암로 8)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 신청자
 - 나.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부동산 거래 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발표일(2026.02.20.)로부터 6개월간 적용됩니다.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030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6층 ~ 지상 34층 8개동 총 924세대 중 잔여 155세대
- **입주시기** : 2027년 10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세대)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잔여 세대수	잔여세대 동·호 내역	
					동	호
2026910059	01	059.9884A	59A	155	101	705, 706, 806, 1006, 1705, 1805, 1806, 2305, 2405, 2406, 2506
					103	303, 403, 501, 602, 603, 702, 802, 803, 901, 1201, 1301, 1302,

						1303, 1306, 1401, 1406, 1501, 1503, 1603, 1801, 1803, 1903, 1906, 2306, 2406, 2706
					104	302, 303, 306, 502, 503, 803, 1003, 1006, 1106, 1201, 1202, 1203, 1401, 1402, 1406, 1706, 1906, 2003, 2103, 2106, 2203, 2306, 2606, 2706, 2902
					105	301, 302, 402, 502, 505, 805, 901, 902, 1002, 1101, 1201, 1202, 1502, 1701, 1702, 2102, 2201, 2405, 2901, 2902
					106	302, 401, 501, 502, 601, 602, 804, 903, 904, 1001, 1003, 1004, 1101, 1102, 1103, 1401, 1402, 1403, 1602, 1703, 1704, 1801, 1802, 2001, 2002, 2102, 2302, 2401, 2402, 2501
					107	304, 502, 602, 803, 804, 1003, 1102, 1104, 1202, 1203, 1503, 1802, 1902, 2001, 2201, 2202, 2203, 2302, 2402
					108	303, 304, 504, 604, 702, 803, 903, 1003, 1202, 1401, 1501, 1603, 1702, 1704, 1801, 1901, 1902, 1904, 2001, 2104, 2301, 2501, 2502, 2602
합 계					155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세대 / 원)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 세대수	동·라인	층 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금액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1회(15%)	2회(15%)	3회(10%)	4회(10%)	5회(1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2026.04.24	2026.05.22	2026.09.23	2027.01.25	2027.05.25	입주 지정일
59A	155	101동 5,6호	5-9층	3	226,779,000	380,557,000	607,336,000	30,366,800	91,100,400	91,100,400	60,733,600	60,733,600	60,733,600	212,567,600
			10-14층	1	227,919,000	382,468,000	610,387,000	30,519,350	91,558,050	91,558,050	61,038,700	61,038,700	61,038,700	213,635,450
			15-19층	3	228,488,000	383,425,000	611,913,000	30,595,650	91,786,950	91,786,950	61,191,300	61,191,300	61,191,300	214,169,550
			20-24층	3	229,628,000	385,337,000	614,965,000	30,748,250	92,244,750	92,244,750	61,496,500	61,496,500	61,496,500	215,237,750
			25층 이상	1	230,768,000	387,249,000	618,017,000	30,900,850	92,702,550	92,702,550	61,801,700	61,801,700	61,801,700	216,305,950
		103동, 104동 6호 105동 5호	3층	1	223,930,000	375,776,000	599,706,000	29,985,300	89,955,900	89,955,900	59,970,600	59,970,600	59,970,600	209,897,100
			5-9층	2	225,640,000	378,644,000	604,284,000	30,214,200	90,642,600	90,642,600	60,428,400	60,428,400	60,428,400	211,499,400
			10-14층	5	226,779,000	380,557,000	607,336,000	30,366,800	91,100,400	91,100,400	60,733,600	60,733,600	60,733,600	212,567,600
			15-19층	3	227,349,000	381,513,000	608,862,000	30,443,100	91,329,300	91,329,300	60,886,200	60,886,200	60,886,200	213,101,700
			20-24층	5	228,488,000	383,425,000	611,913,000	30,595,650	91,786,950	91,786,950	61,191,300	61,191,300	61,191,300	214,169,550
			25층 이상	3	229,628,000	385,337,000	614,965,000	30,748,250	92,244,750	92,244,750	61,496,500	61,496,500	61,496,500	215,237,750
		106동, 107동, 108동 1,2,3,4호	3층	4	222,791,000	373,863,000	596,654,000	29,832,700	89,498,100	89,498,100	59,665,400	59,665,400	59,665,400	208,828,900
			4층	1	223,360,000	374,820,000	598,180,000	29,909,000	89,727,000	89,727,000	59,818,000	59,818,000	59,818,000	209,363,000
			5-9층	16	224,500,000	376,732,000	601,232,000	30,061,600	90,184,800	90,184,800	60,123,200	60,123,200	60,123,200	210,431,200
			10-14층	17	225,640,000	378,644,000	604,284,000	30,214,200	90,642,600	90,642,600	60,428,400	60,428,400	60,428,400	211,499,400
			15-19층	16	226,209,000	379,601,000	605,810,000	30,290,500	90,871,500	90,871,500	60,581,000	60,581,000	60,581,000	212,033,500

			20-24층	15	227,349,000	381,513,000	608,862,000	30,443,100	91,329,300	91,329,300	60,886,200	60,886,200	60,886,200	213,101,700
			25층 이상	4	228,488,000	383,425,000	611,913,000	30,595,650	91,786,950	91,786,950	61,191,300	61,191,300	61,191,300	214,169,550
		103동, 104동 1,2,3호 105동 1,2호	3층	5	222,221,000	372,907,000	595,128,000	29,756,400	89,269,200	89,269,200	59,512,800	59,512,800	59,512,800	208,294,800
			4층	2	222,791,000	373,863,000	596,654,000	29,832,700	89,498,100	89,498,100	59,665,400	59,665,400	59,665,400	208,828,900
			5-9층	13	223,930,000	375,776,000	599,706,000	29,985,300	89,955,900	89,955,900	59,970,600	59,970,600	59,970,600	209,897,100
			10-14층	15	225,070,000	377,688,000	602,758,000	30,137,900	90,413,700	90,413,700	60,275,800	60,275,800	60,275,800	210,965,300
			15-19층	9	225,640,000	378,644,000	604,284,000	30,214,200	90,642,600	90,642,600	60,428,400	60,428,400	60,428,400	211,499,400
			20-24층	5	226,779,000	380,557,000	607,336,000	30,366,800	91,100,400	91,100,400	60,733,600	60,733,600	60,733,600	212,567,600
			25층 이상	3	227,919,000	382,468,000	610,387,000	30,519,350	91,558,050	91,558,050	61,038,700	61,038,700	61,038,700	213,635,45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 본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은 사업주체에서 무상으로 제공하오니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발코니 미확장 요구 및 미확장에 따른 공사비 상당 금액을 사업주체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IV	청약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구분	내용
대상자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함
청약신청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선정 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예비입주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음

V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3.19(목) ~ 2026.03.28(토)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03.19(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VI

당첨자 자격 검증 서류제출 안내

■ 당첨자 자격 검증 서류제출 일정 및 장소

구분	일정	장소
당첨자 자격 검증 서류제출	2026.03.20.(금) (10:00 ~ 16:00)	e편한세상 센텀 하이베뉴 주택전시관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암로 8)

■ 당첨자 자격 검증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 주택전시관에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용에 한함(용도: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3자 대리인(위임인) 계약 불가 ※ 인터넷발급용 인감증명서의 제출의 경우, 발급용도는 '아파트 계약용' → 제출처는 'DL이앤씨(주) 표기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대조 확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인(위임인) 계약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기록대조일을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전체 발급'으로 발급
해외 근로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해외근무자(단신부임)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 국내기업·기관소속에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근로 관련 서류, 취업·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출입국사실증명원	세대원 및 미성년자녀	- 세대원 및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 체류 유무확인 ※제출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 할 수 있음)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청약신청자 본인 발급(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		위임장	청약자	청약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주택전시관에 비치
	○		대리인신분증,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본인 또는 세대구성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등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등본, 주택공시가격 확인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미분양 주택 확인 서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기타 소명서류	본인 또는 세대구성원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상기 서류는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3.11.)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주택전시관에서는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인터넷 청약 신청 원칙으로 인터넷으로 신청한 주택공급 신청자에 한하여 상기 구비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해야 하며, 주택공급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상기 서류 외에 사업주체가 당첨자 자격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 분	일정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6.03.21.(토) / (10:00 ~ 16:00)	e편한세상 센텀 하이베뉴 주택전시관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암로 8)

- ※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 불가)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 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 체결 시 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해당 서류	발급기준	추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계약자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현장수납 불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한 경우 생략
	○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및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주택전시관 비치
	○		수입인지(인지세)		-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	당첨유형별 입주 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일체		-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일체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사항	○		위임장	계약자(본인)	- 주택전시관 비치
	○		인감증명서(위임용), 인감도장	계약자(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		신분증, 인감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상기 서류는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3.11.)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균등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중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세액(균등 납부)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사업주체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계약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우체국, 은행)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결제원(☎1577-55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우리은행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디엘이앤씨(주), 재송2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세대별로 가상계좌가 부여되며 모계좌 (우리은행 1005-504-883230 / 디엘이앤씨(주), 재송2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로 관리됩니다.
- ※ 계약금 무통장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5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501홍길동'으로 기재)
-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주)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함.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제한사항 등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 (공급계약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함.
- 주변단지의 신축이나 증,개축 또는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소음·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생활환경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니 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본 공급계약의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람.
-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아파트 공급계약서, 발코니 확장계약서, 권리의무승계(전매) 등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 등(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당사자는 계약서별로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 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함. [부동산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분양계약서 및 계약 구비서류를 준용함.

■ 추가선택품목(II)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구성	판매가격	비고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LG	일반형(거실+침실1)	3,400,000	택1
		일반형(거실+침실1+침실2+침실3)	6,100,000	
		프리미엄형(거실+침실1)	3,700,000	
		프리미엄형(거실+침실1+침실2+침실3)	6,700,000	

■ 추가선택품목(II) 공급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약금(10%)	중도금(30%)	잔금(60%)
----------	----------	---------

계약시	아파트 중도금 1회차 날짜	입주 시(입주지정기간 내)								
■ 추가선택품목(Ⅱ) 공급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table><tr><th>구 분</th><th>금융기관</th><th>납부계좌</th><th>예금주</th></tr><tr><td>추가선택품목(Ⅱ) 계약금·중도금·잔금</td><td>우리은행</td><td>세대별 가상계좌 부여</td><td>디엘이앤씨(주)</td></tr></table> ※ 지정된 납부일(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세대별로 가상계좌가 부여되며 모계좌 (우리은행 1005-504-820016 / 디엘이앤씨(주))로 관리됩니다. ※ 상기 계좌와 아파트 공급대금, 추가선택품목(Ⅰ) 공급대금, 추가선택품목(Ⅲ) 공급대금 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입금 시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비용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납부 시 동(3자리), 호수(4자리)와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101동101호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하여야 함)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으로,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구 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추가선택품목(Ⅱ) 계약금·중도금·잔금	우리은행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디엘이앤씨(주)
구 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추가선택품목(Ⅱ) 계약금·중도금·잔금	우리은행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디엘이앤씨(주)							
■ 추가선택품목(Ⅲ) (유상옵션) ※ 추가선택품목(Ⅲ) 계약의 경우, 계약자 대상으로 추후 별도 계약 일정을 통보 할 예정입니다.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VIII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table> <tr> <td>검색대상</td><td>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td></tr> <tr> <td>주택의 범위</td><td>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td></tr> <tr> <td>주택처분 기준일</td><td>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td></tr> <tr> <td>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td><td>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td></tr> </table>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 조항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주거전용면적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제53조제9호가목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1억원 |
| 제53조제9호나목 |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3억원 |
|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 | |
| | 도시형 생활주택 | | |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별표3에 의거 해당 주택의 최초 당첨자발표일(2026.02.20.)로부터 6개월간 전매가 금지됩니다.(단, 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전매금지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집니다.(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시행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 대출안내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불과합니다.)
- 계약자의 중도금 집단대출은 사업주체에 의해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이 알선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중도금 집단대출 금융기관 알선이 시행되는 경우,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알선한 금융기관에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람.)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한 확정을 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60%인 중도금 범위 내에서 중도금 대출 알선을 시행 할 예정입니다.(단,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집단대출 알선이 시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자는 이러한 경우에도 본인의 책임하에 기일 내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금융관련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 “적격대출”)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도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 약정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해당 납부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이자자는 최초 대출이자 발생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전일까지는 사업주체가 부담하고,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이후부터는 계약자의 실제입주일과 관계없이 계약자가 중도금 이자를 부담하므로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분양권 전매, 상속, 증여 등에 따라 계약자가 변경될 당시 중간 정산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대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실행 후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등)으로 인해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지 등에 따라 분양대금이 완납되지 않을 경우, 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대출 은행과 체결한 중도금 체결협약 등에 의거하여 금융기관의 계약해지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중도금 무이자 조건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중도금 대출신청 관련 안내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 미신청, 지연신청” 또는 “금융거래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따른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 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시장상황에 따라 대출은행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추후 사업주체 또는 해당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중도금 대출은행이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은 시행사와 금융기관간 협의내용에 따라 만기가 지정되어 있으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만기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만기연장의 의무가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이 경과하도록 중도금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와 금융기관간 사전 협의한 대출기간이 만료되어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일정 시점 이후 또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 승계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의 보증에 의하여 대출금융기관이 알선된 경우 계약자가 대출금융기관에 대해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자의 여신거래약정 위반, 기타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대출금융 기관이 사업주체에게 보증채무의 이행 또는 대위 변제를 요구하여 사업주체가 이를 이행한 경우 분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였더라도 보증서 발급 불가, 대출한도 부족, 신용상의 문제 등 대출 결격사유가 발생(또는 발견될)할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시 당해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입주지정기간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이자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까지 사업주체가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 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시행사(사업주체)	시공사
상 호	재송2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DL이앤씨(주)
주 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61번길 72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65, A동(마곡동, 원그로브)
법인등록번호	181171-0006653	110111-7736808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당사 홈페이지(<https://www.elife.co.kr>)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암로 8

■ 분양 문의 : 051-782-5777

■ 인터넷 홈페이지 : www.elife.co.kr

- ※ 본 주택전시관은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및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및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전시관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기재사항의 오류 및 이 공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건축법」 등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및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